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공 항 소 음 방 지 및 소 음 대 책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정하는 소음기준의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변경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48호, 2017.9.19. 일부개정, 2023.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4호, 2021.5.18. 일부개정, 2021.11.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안 제11조 제2항)

-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

2) 이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웨클에서 가중등가소음도 단위로 변경함.

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재검토 기한의 예외 규정(안 제2조 제6항)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는 고시한 때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검토 기한 도래 이전에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 및 방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와 방법을 명시함.

라.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매수 업무 권한의 위임(제17조 2의3호 신설)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하도록 규정된 농지는 지방항공청장이 매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WECPNL) 95”를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WECPNL) 90 이상 95”를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5 이상 79”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WECPNL) 75 이상 90”을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이상 75”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WECPNL) 70 이상 75”를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 이상 61”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신설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 ----- ----- ----- ----- ----- ----- ----- ----- -----.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u>WECPNL</u>) 95 이상	1. ------(가중 <u>등가소음도[LdendB(A)]</u>) 79 - -----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u>WECPNL</u>) 90 이상 95 미만	2. ------(가중 <u>등가소음도[LdendB(A)]</u>) 75 <u>이상 79</u> -----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u>WECPNL</u>) 75 이상 90 미만	3. ------(가중 <u>등가소음도[LdendB(A)]</u>) 61 <u>이상 75</u>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⑥ ----- ----- ----- ----- -----

<단서 신설>

⑦ ~ ⑪ (생략)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③ (생략)

<신 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 검
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가중등가소
음도[LdendB(A)]) 57 이상 61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
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

	<u>사에 관한 계약</u> 2. <u>물품 제조·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u>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u>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 ----- ----- -----.
1. ~ 2의2. (생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의 매수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연락처	(044) 201 - 4341